

지급보증서



보증번호: PEBKRA020581

보증처 : 주채무자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(웹 사이트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)에서 선지급식 통신판매 방식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("재화등")을 구매하는 소비자((가) 신용카드에 의한 대금지급의 경우 및 (나)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거나 제3자가 배송을 확인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는 제외)

보증인 :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

주채무자 명칭 : (주) 리치몬트 코리아

주소 : 서울 중구 퇴계로 100 스테이트타워 남산

보증한도액 : KRW150,000,000 (금일억오천만원정)

보증기간 : 2026년 03월 17일부터 2031년 01월 16일까지

피보증채무의 내용 : 주채무자가 보증처에 대하여 아래 사유의 발생으로 인하여 부담하는 채무

- 청약철회기간(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) 내 청약 철회에 의하여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
- 재화등의 공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
- 구매한 재화등의 배송 전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대금환급의무의 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채무

보증채무의 이행청구 : 본 보증채무는 보증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다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행청구할 수 있습니다.

1.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있는 때
2. 파산신청,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는 때
3. 상기 피보증채무의 불이행이 있는 때

이행청구기간 : 보증기간 만료 이후 2 개월 이내에 보증처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없는 때에는 본 보증서 원본이 반환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보증인의 보증채무는 소멸하는 것으로 합니다.

특약사항 :

1. 본 보증서는 2025 년 3 월 17 일에 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(이하 "은행")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(증서번호 PEBKRA018822, 보증한도액 KRW150,000,000)(이하 "구 보증서")를 대체하여 발급되는 것이며, 본 보증서는 구 보증서의 회수를 조건으로 효력을 발생합니다. 은행은 구 보증서 회수 시 구 보증서 조건에 따라 보증기간 중에 보증한도액 내에서 발생한 채무도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보증에 따른 보증채무를 부담합니다. 어떠한 경우라도 은행이 구 보증서 또는 본 보증서에 첨부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(보증처 용) 제 3 조에 의거,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후에 다른 보증처에 의한 이행 청구가 이루어져도 그 지급액만큼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액은 감액됩니다.



2. 다수의 보증처가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하는 경우 보증채무의 지급은 보증인에 청구가 접수된 순서대로 이루어집니다. 보증인이 본 보증서의 조건에 의하여 특정 보증처에 지급을 한 경우 그 지급액 만큼 본 보증서의 보증한도액은 감액되며, 후순위의 다른 보증처에 대한 보증금 지급 시 그 감액된 보증한도액이 적용됩니다.
3. 본 보증서에 따른 이행 청구 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 - 1) 보증처가 피보증채무 불이행 사유로 손해를 입었음을 확인하는 진술서
 - 2) 첨부 양식에 의하여 주채무자가 작성한 현금 환불 거절 확인서
 - 3) 주채무자가 발행한 구매 증빙서류(현금영수증 등)
 - 4) 주채무자의 법인인감에 의하여 원본과 일치여부가 확인된 본 보증서 사본
4. 보증처는 본 보증서를 근거로 보증인의 대한민국 내 다른 지점이나 해외 다른 계열회사에 이행청구할 수 없습니다.
5. 보증인은 보증처가 국제연합(UN), 유럽연합(EU) 또는 미국의 제재 목록에 등재된 자, 홍콩 금융당국, 영국, 대한민국이 발표, 집행 및 이행하는 제재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거래가 금지된 자인 경우 본 보증서에 따른 지급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6. 본 보증서는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될 수 없으며, 또한 관련 제한에 따라 보이콧(Boycott), 제재(Sanctions) 또는 통상금지(Embargo)가 적용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될 수 없습니다.
7. 본 보증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첨부된 지급보증거래 이용약관(보증처용)이 적용되며, 청구보증통일규칙 (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, ICC Publication No. 758)의 적용을 받습니다. 본 보증서의 준거법은 한국법으로 합니다.

SY LEE, GTS

DY KIM, GTS



2026년 03월 17일
홍콩상하이은행서울지점



대한민국정부
The Government of
the Republic of Korea

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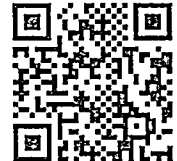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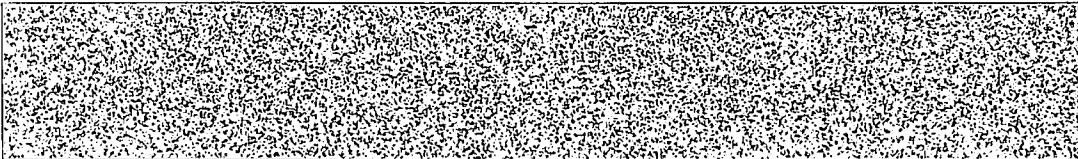
(Revenue Stamp of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)

고 유 번 호 : 2609917-029177244
(Certificate No.)
수 입 인 지 금 액 : 10,000원
(Stamp Duty Amount)
성 명 (상 호) : 홍콩상하이은행
(N a m e)
생년월일/사업자번호 : 1028400679
(Registration No.)
발 급 처 : 인터넷 / 신한은행
(Stamping Channel)
발 급 일 자 : 2026.03.11
(Certificate Issued Date)

재 정 경 제 부 장 관
(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)



* 전자수입인지를 위변조 및 복사(copy)하여 중복 사용할 경우, 조세범 처벌법 제12조 제4호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

< 사용 방법 >

* 전자수입인지는 1회 출력만 가능하며(프린터 시험인쇄 요망), 제출서류 1건의 과세금액을 1매로 첨부(添附)하여 사용합니다.

< 전자적 소인 처리 방법 >

* 행정기관에 전자수입인지를 제출하는 경우, 전자수입인지를 접수하는 공무원이 전자적 소인처리를 하여야 합니다.
(접수한 공무원의 전자적 소인처리 절차는 gov.e-revenuestamp.kr에서 수행)

* 행정기관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인(私人)간에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는 경우, www.e-revenuestamp.or.kr 에서 전자적소인 처리하여 전자수입인지가 "사용"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부정한 제사용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주의사항 : 소인처리된 전자수입인지는 사용 및 환매가 불가하오니 신중한 소인처리 하시기 바랍니다.

< 환매 방법 >

* 사용하지 아니한 전자수입인지는 구입처에 환매(액면금액의 97% 상당액)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인터넷 발급분의 경우 우체국 및 금융회사(은행 등)를 통해 환매가 가능합니다.